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이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임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추가함(안 제1조).
-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조).
-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함(안 제7조제1항).
- 연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은 지역·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기준을 수립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 식재료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함(안 제15조의2 신설).

II. 검토의견

개정안은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시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현재 국·공립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식품관계 법령 위반자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참가 제한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¹⁾ 개정안과 같이 “해당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현행 제도의 시행 상황과 달리 위반행위와 관련된 식재료 품목에 대해서만 입찰참가를 제한(또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교육부와 협의하여 ‘해당’을 삭제함.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신 설>	제15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① 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15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① 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1)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793호)” 검토보고서, pp.7-8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과 「학교급식법」에서는 식품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관련 업체에게 학교 식재료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국·공립학교의 식재료 입찰업무가 계약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처리되고 있으며, 식품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법령상 근거 없이 식재료 입찰참가의 기회를 제한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식품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보호하려는 것으로 급식의 안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	--	---

그 밖에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법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Ⅲ. 관계기관 의견

행정안전부는 재학중인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는 안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국가공무원인 교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도록 한 「정부조직법」 2)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의 취지에 반할 우

2) 「정부조직법」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직무의 성질상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공무원의 배치) ①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려가 있고, 국가공무원인 교원 정원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정부 인력 운영을 경직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는 규정을,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전문위원 이 은 정)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